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강 원 도 시 가 스 (주) 참 빛 원 주 도 시 가 스 (주) 참 빛 영 동 도 시 가 스 (주) 참 빛 도 시 가 스 (주) 명 성 파 워 그 린 (주)

- 1 -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3	도 (목적)	1
	제 2 3	도 (의무)	1
	제 3 3	도 (적용)	1
	제 4 3	도 (용어의 정의)	1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 3	도 (공급계획)	3
	제 6 3	도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4
	제 7 3	도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4
	제 8 3	도 (승낙의 의무)	5
	제 9 3	도 (계약의 준수)	6
	제 10 3	또 (하 약)	7
	제11 3	도 (계약소멸 후의 관계)	8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 12 3	도 (공사시행)	8
	제 13 3	도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9
	제 14 3	도 (가스계량기)	9
	제15 3	도 (공사비)	11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 16 3	도 (검 침)	12
	제 17 3	도 (계량의 단위)	13

	제18 조	(사용열량의 산정)	13
제	5 장	요금	
	제19 조	(요금)	14
	제20 조	(가스요금 용도구분)	14
	제21 조	(요금의 수납)	16
	제22 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17
	제23 조	(이의 신청)	18
	제24 조	(요금계산의 정정)	18
	제25 조	(보증금)	19
제	6 장	공급	
	제26 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20
	제27 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21
	제28 조	(공급중지)	22
	제29 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23
제	7 장	안전	
	제30 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23
	제31 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	24
	제32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24
제	8 장	기타	
	제33 조	(문서보관)	25
	제34 조	(사용장소의 출입)	25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부	칙		25
별	丑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26
	별표 2	시설분담금	27
	별표 3	가스계량기 교체 비용	30
	별표 4	가스요금표	3
별	지		
	별지 1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36
	별지 2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37
	별지 3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38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연혁

• 제정 1984. 9. 20. 상정 1379 - 24396호 • 개정 1993. 4.30. 상정 57244 - 541호 • 개정 2000. 5. 22. 경제 57253 - 368호 • 개정 2002 8 28 경제 57253 - 1633호 • 개정 2003. 4. 19. 지식 57253 - 297호 • 개정 2004. 10. 20. 경제정책과 - 15353호 • 개정 2005. 4. 25. 경제정책과 - 6335호 • 개정 2007. 6. 29. 경제정책과 - 11523호 • 개정 2008 6 25 경제정책과 - 3281호 • 개정 2009. 4. 7. 청정에너지정책과 - 3929호 • 개정 2010. 4. 22. 청정에너지정책과 - 4785호 • 개정 2010. 9.30. 청정에너지정책과 - 10584호 • 개정 2012. 3.12. 청정에너지정책과 - 3122호 • 개정 2012. 6. 27. 청정에너지정책과 - 7827호 • 개정 2012. 7.17. 청정에너지정책과 - 8721호 • 개정 2012. 12. 17. 에너지자원과 - 5776호 • 개정 2013. 4.11. 에너지자원과 - 4163호 • 개정 2014. 1. 7. 에너지자원과 - 281호 • 개정 2014. 9. 15. 에너지자원과 - 12809호 에너지자원과 - 18878호 개정 2014, 12, 30. • 개정 2015. 11. 10. 에너지과 - 18624호 • 개정 2016. 10. 26. 에너지과 - 16362호 • 개정 2017. 4.28. 에너지과 - 7781호 • 개정 2017. 6. 30. 에너지과 - 11225호 에너지과 - 22165호 개정 2017, 12, 26. • 개정 2018. 4.30. 에너지과 - 8605호 • 개정 2018. 6.29. 에너지과 - 12734호 • 개정 2018. 10.8. 에너지과 - 20316호 • 개정 2019. 7. 1. 에너지과 - 14145호 • 개정 2019. 7.24. 에너지과 - 15929호 • 개정 2020. 3.18. 에너지과 - 6722호 • 개정 2020. 7. 1. 에너지과 - 14918호 • 개정 2020. 11. 30. 에너지과 - 27092호 • 개정 2022. 12. 30. 에너지과 - 00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가스"라 합니다)를 공 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무)

-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합니다)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 조한 가스 1㎡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 2."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 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3."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 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4."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 5."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 6."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 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 7."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8."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 니다
-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12."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 중단을 말합니다.
- 13."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15."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 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 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 16."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 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 시조치를 말합니다.
-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 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19. "시설분담금" 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당금으로 구분됩니다
- 가. "일반시설분담금" 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 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 금을 말합니다.
-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 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 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20.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 21.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22. "가스계량기"란 도시가스 사용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작된 기기를 말하며, 가스사용량만을 아날로그 형태로 표시하는 "일반계량기" 와 일반계량기와 다른 "특수계량기"(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디지털계량기, 온압 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로 구분합니다.
- 23. "검침"이라 함은 가스 사용자의 계량기 지침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육안 확인, 계량기 사진촬영, 원격 지시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공급계획)

회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가 확정 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 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제6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 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 니다.
- ② 회사는 가스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과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제7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신청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공급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도시가스 공급계약(재계약 포함)시 가스의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택용 이외의 수요자가 월사용예정량이 10만째 이상인 경우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8조(승낙의 의무)

- ① 회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 단, 신청자와 전화, 이메일 통을 통한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 예정 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 포함)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 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신청자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 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 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 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준수)

-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사용료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전자문서포함) 또는 전화 등으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액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이외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4. 가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한 경우도 변경요인이 발생한 날 이후의 사용요금 등 제 징수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법원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변경일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5.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된 가스 사용자는 이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 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일수 계산하여 최대 2개월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연체료계산식 = 연체금액×(연체일수/해당 월의 일수) × 2%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위약금은 부정사용량에 대하여 징수하며, 발생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시점의 열량 및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부정사용량을 계측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동월 사용량을, 전년동월 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

에는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최근 3개월 이내 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5조 4항에 의한 월사용예정량으로 산정합니다.

-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기, 원격지시부의**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교체비용 + 부정사용료의 사용료의 5배
- 2. 봉인파손 사용 : 부정사용료의 3배
- 3.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부정사용료의 5배
- 4. 계량기이전, 배관 불법연결 사용 : 부정사용료의 5배
- 5. 계량기 무단이설 : 부정사용료의 3배
- 6. 부정시공 사용 : 부정사용료의 5배
-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 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1]에 따른 통지
-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10조(해약)

-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 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③ 제28조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 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 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임의로 가스를 사용하거나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 거절 및 공급을 중단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이전 이미 다른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중인 경우에 는 가스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 ⑥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 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합니다.
- ① 1년 이상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 세대 통보 후 계량기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가스공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소멸후의 관계)

-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 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 소에 계속 존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 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 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 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 기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 에 응해야 합니다

제13조(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②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에 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가스계량기)

-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존계량기의 사용 및 배관의 추가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② 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0

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교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 시에는 회사가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주택용(중앙난방용 제외) 일반계량 기의 검정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 검정교체에 대해서는 별표 3 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하고, 교체비를 납부한 수용가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의 사유(공가, 장기부재, 공급중지, 장기미사용 등)로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교체를 보류 할 수 있습니다.
- 1. G-6(10㎡) 이상의 계량기 및 특수계량기 교체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량기 교체전 교체비를 일시납부하거나. 회사의 입회하에 수용가가 실시합니다.
- 2. G-25(40㎡/h) 초과 계량기 및 별표3에서 교체비를 정하지 않은 계량기의 교체 비용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④ G-6(10㎡/h) 이상 계량기와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환급 하여야 하며, 회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기간중 전문업체를 통한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 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성능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 ⑥ 주택용계량기 중 일반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별표3에 의거 매월 교체비를 부과하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특수계량기 교체시 회사가 교체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 납부한 교체비와의 차액은 환불, 일시납부 또는 차기 교체비 부과액에서 정산처리 합니다. 단,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리드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드스위치를 포함하여 회사가 교체·연결하며, 계량기 이외의 설비(통신선로, 지시부, 중앙집중시스템 등)

에 대한 유지 및 보수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①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 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8) 제7항의 온압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15조(공사비)

-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 토지경계 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1. 다만,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41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은 별표 2 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으로 합니다.
 (※ 가정난방용 이외의 시설은 표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 부담 조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으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산업단지, 택지개발 지구 등에 수요자 공사비 분담으로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수요자 부담 내역을 년1회(매년 12월 말일 이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부과되어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 ⑤ 내경 63mm 이내의 공급관으로서 10m 이내로 설치되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 치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등으로 산정한 표준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에 의하여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그 외의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 공사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⑥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출 등의 응급조치비용 및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가목 4)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당 합니다
- ①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파손, 멸실, 증설,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 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 (8)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6조(검침)

-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 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취사세대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검침 기능이 있는 가스계 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지정 검침일에 원격지침을 회사에 제공하는 등 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 할 때
 -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 5. 제1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의 확인이 필요할 때
 - 6. 원격검침설비의 확인이 필요할 때
 - 7. 세대 안전점검을 실시 할 때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계량의 단위)

검침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법 시행령 제11조 의한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과 도지사의"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 월분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사용량(N㎡)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해당기간의 월간 가중평균열량(MJ/N㎡)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합니다.
-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 ⑤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든가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 합니다.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 ⑥ 당월 검침 된 지침과 직전 고지 지침의 차이를 당월분 사용량으로 산정합니다.
- ⑦ 가스계량기가 옥내에 설치 된 경우 가스사용자가 자가검침시 계량기 지침과 상이하 게 자가검침부에 기재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에 통보하였을 때에는 사용량 차이를 확인한 시점의 단위열량 및 요금단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일시 부과합니다.
- ⑧ 원격검침 기능이 있는 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

할 경우 계량기 지침과 원격지시부 지침의 차이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계량기 지침 을 우선 적용하며, 지침 차이 확인 시점의 단위열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제 5 장 요 금

제19조(요금)

-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 지사가 승인한 별표 4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단, 천연가스가 아닌 도시가스로 천연가스 표준열량과 상이한 경우 공급비용은 열량비율로 적용합니다.
- ②"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 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단. 바이오가스 원료비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릅니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을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의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 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⑥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제20조(가스요금 용도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 난방· 중앙난방), 업무용(업무난방) 냉난방 공조용(일반시설용·대용량레저용), 일반용(영업1·영업2·대용량레저용), 산업용(동절기· 하절기·기타월), 열병합용, 열전용 설비용, 수송용 및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용 용도를 적용합니다.

-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 방. 중앙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2. 업무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 3. 냉난방 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 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지방세법 제104조제4항에 의한 건축물 이외에 가스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는 하절기에만 냉난방 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 4. 일반용영업1 요금은 1호, 2호, 3호, 5호, 7호, 8호 및 9호 내지 10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5. 일반용영업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6. 일반용(대용량레저용), 업무용(대용량레저용), 냉난방공조용(대용량레저용) 요금은 도지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7.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 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하는 가스는 8호의 열병합용 또는 9호의 열전용설비용 요금을 적용하고,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요금은 11호의 연료전지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 8.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1) ~ 3)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11호의 연료전지용에 해당하는 경우 연료전 지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 3)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 9. 열전용설비용 요금
- 1)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2) 열병합 발전용 설비와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병합발

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1호의 주택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 10.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11. 연료전지용 요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1조(요금의 수납)

-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 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전자고지(애플리케이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우선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종이고지서를 요청 할 경우 회사는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해 별도로 독촉고지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휴대 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수단 포함)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 1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 에 미달하는 경우
-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 금경감지침"에 따릅니다.
- ⑦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 ⑧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⑨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 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정수할 수 있습니다
- ⑩ 정액요금제도는 가스사용자와 별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①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22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요금의 정상적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공급중지, 공급폐지, 부도, 파산, 회생신청, 경매개시 등) 또는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연체한 가스사용자는 월 2회 이상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가스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 및 기타 회사가 신용카드 사업자와 별도로 합의한 용도의 요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④ 도지사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⑥ 가스사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기한 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⑦ 가스요금(교체비포함) 및 가산금은 납부 의무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미납요금 중 일부를 납부 한 때에는 납부 의무가 발생한 순

서에 따라 납부 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이의신청)

-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5%를 적용합니다.
- ⑤ 회사는 공급중단 등 그 밖의 과실로 가스사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스사용자와 혐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⑥ 가스누출 원인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는 누출량을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누출량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 동월사용량, 전월사용량 순으로 비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월사용 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 합니다.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 ① 회사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 에는 전년도 월평균사용량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 ② 제26조제1항제1호의 단서 중 월간가중평균열량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연가 스공급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 요금으로부터 할인합니다.

제25조(보증금)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 3. 제2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 4. 가스요금을 연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 5. 부도, 파산, 회생신청, 경매개시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 6. 가스사용시설의 시험가동, 동파방지, 단기임대 등 임시사용자
- 7.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 대사업자 또는 위탁관리자 및 직영사업자
- 8. 가스요금을 면탈 할 목적으로 무단이사 또는 부정사용, 사용자명의 허위등록 등을 한 이력이 있는 가스사용자
- ② 제1항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약일 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형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 ④ 제1항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 사용량
-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 3. KGS FU551(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9(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 ⑤ 회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 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 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보증금 반환시 예치기간 전체에 대한 이자를 일괄 지급하거나,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 또는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기간별 평균 이율
-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 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 금 이율

제 6 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과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천연가스
 - 열량
 - · 최고열량 44.4 MJ/Nm³(10.600 kal/Nm³)
 - · 친저열량 41.0 MJ/Nm³(9.800 kcal/Nm³)

다만, 상기 열량 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 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 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 가중평균열량의 ± 2% 이내이어야 합니다.

-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
- 2. 바이오가스(원주)
 - 열량
 - · 최고열량 39.1 MJ/Nm³ (9.332 kcal/Nm3)
 - · 친저열량 37.9 MJ/Nm³ (9.046 kcal/Nm3)
 - 성분 : 바이오가스(메탄 95%) 다만, 상기 열량 범위내에서 월간 가중평균열량은 표준열량으로 <mark>합니다</mark>.
- 3. 압력 (주택용)
 - · 최고압력 2,451.7 Pa (250 mmAg)
 - · 최저압력 980.7 Pa (100 mmAg)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집 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수요자에게는 최고압력 4Mpa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호(2016.1.21.)에 따릅니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바이오가스는 연소속도 39~40㎝/sec, 최고웨버지수 65.7 MJ/Nm³, 최저웨버지수 63.7 MJ/Nm³ 의 범위내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 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 행합니다.
- ④ 제1항 2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공급 시 전용배관을 통하여 가스를 공급합니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 변경, 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한 때
- 6.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 규정한 각 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 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 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합니다.

④ 제1항의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 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8조(공급중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를 계속 공급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해가 예상되어 긴급, 부득이 하다고 판단 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공급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보증금,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전화, 안내장, 애플리케이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계량기 교체 등 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3 가스사용 요금을 면탈 할 목적으로 사용자 명의를 부정하게 등록한 때.
-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로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 한 때
- 5. 가스사용자의 토지 내에 있는 회사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또는 2회 이상 사용계약 체결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한 때
-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 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 8. 그 밖의 안전관리 **및 관련법에 의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 및 요청사항**을 이 행하지 않았을 때
-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만기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 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배관절단 등)를 할 수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가 된 사실을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유로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공급재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안 전

제30조(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 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 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 다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31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책임)

-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정당한 시설개선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관리의무를 태만히하거나 시설개선권고에 대해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⑤ 공동주택의 정기검사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 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는 공급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스사용이 중지(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임의로 가스사용을 재개 할 수 없으며, 이사 또는 입주 시 회사 또는 적정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가스연소기의 연결, 철거, 마감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규정에 의거 회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8 장 기 타

제33조(문서보관)

-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자료 등 법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제34조(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 점검, 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

ш ...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제6조)

티 급	2.5	4	6	10	16	25	40
모 델	G-1.6	G-2.5	G-4	G-6	G-10	G-16	G-25
표준소비량 (m³/h)	2.5	4	6	10	16	25	40

- o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 사용 용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 o 표준소비량(m²/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8MJ/Nm²(10.145kal/Nm²)로 합니다.
- o 수요가 소비량 산정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 시설분담금(제7조, 제15조)

- 1. 일반 시설분담금
- 가. 기준단가: 25.932원/m·hr
- 나. 금액: 기준단가(원/㎡)×시간당표준가스소비량(㎡/hr)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은 [별표1]가스 계량기의 등급별 표준 소비량에 따라 적용 합니다.
- 40㎡/hr 초과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산정시 시간유량(㎡/h)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가. 적용단가

구분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기본요금	비고
춘천시	307원/㎡·hr	420원/월	집단에너지 공급 세대

-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사용월수) ÷ (가 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을 적용한다.
- 사용월수는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1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 취사전용 세대 기본요금 부담 : 취사전용 기본요금 부과
-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가.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 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423.175원/m을 적용합니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 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 배관 연장거리(인입배관 제외)를 적용합니다.
- 적용률은 65%를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에 의거하여 총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일반시설분담 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사전용 가스사용자가 있을 경우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24.91원/㎡ × 가스사용자의 년평균 사용량(1,153㎡) × 내용연수(20년) × 가스사용세대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 도시가스 회사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을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 비량(단, 주택용외 용도로서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이 76㎡/hr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 최대 거주세대 기준)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제외)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 다. 특별공사 시행시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라. 수요가부담 분담금 대상지역의 배관공사 완료 이후 5년 이내에 추가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입관 공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배관공사 완료 이후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가스를 신규로 사용하려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 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을 위한 100m당 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내에 잠재적수요 세대(공급신청 지역내 미신청 세대 등 향후 3년 이내 도시가스 사용이 예상되는 세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스사용세대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100m 당 가정용 4등급기준 1세대별 분담금액)은 아래의 [세대당 분담금 내역표]로 합니다.
- 4. 가스사용시설의 변경(해약 후 재사용을 포함합니다)으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표준가스소비량 증가분에 한하여 1항의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 5. 부가가치세는 별도 가산합니다.
- 6. 산정 외 세부사항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4-557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세대당 분당금 내역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세대수	41세대	40세대	39세대	38세대	37세대	36세대	35세대
금액	-	9,330	26,960	45,520	65,080	85,730	107,560
세대수	34세대	33세대	32세대	31세대	30세대	29세대	28세대
금액	130,680	155,190	181,240	208,970	238,550	270,160	304,040
세대수	27세대	26세대	25세대	24세대	23세대	22세대	21세대
금액	340,420	379,600	421,920	467,770	517,600	571,960	631,490
세대수	20세대	19세대	18세대	17세대	16세대	15세대	14세대
금액	696,990	769,370	849,800	939,690	1,040,820	1,155,430	1,286,410
세대수	13세대	12세대	11세대	10세대	9세대	8세대	7세대
금액	1,437,540	1,613,870	1,822,250	2,072,310	2,377,930	2,759,970	3,251,150
세대수	6세대	5세대	4세대	3세대	2세대	1세대	
금액	3,906,070	4,822,950	6,198,270	8,490,470	13,074,870	26,828,070	

[별표 3] 가스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용

3-1 일반계량기

(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계량기	G-6	G-10	G-16	G-25	G-25초과
모델	(10㎡/h)	(16㎡/h)	(25㎡/h)	(40 m²/h)	(40㎡/h초과)
금 액	2,290	2,520	2,570	4,790	계량기 등급별 교체비용을 수요가와 협의 결정

3-2 특수계량기

(단위: 원/월, 부가세 별도)

계량기모델 구분	G-1.6 (2.5㎡/h)	G-2.5 (4㎡/h)	G-4 (6㎡/h)	비고
디지털계량기	240	230	200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750	740	720	
누출 점검용 계량기	250	240	220	
듀얼 계량기	290	280	250	

- -계량기 모델: ()안의 수치는 최대 사용용량을 의미합니다.
- -표 3-1의 계량기 교체비용은 주택용을 제외한 계량기에 적용합니다.
- 단, 주택용 중 중앙난방용은 계량기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표 3-2의 교체비용은 특수계량기와 일반계량기의 차액으로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며,
-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계량기의 교체비용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온압보정기가 설치된 경우 온압보정기 교체비용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교체비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G-6 5년, G-10 이상 8년으로 검정 유효기간이 설정된 계량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별표 4] 가스요금표 ○ 강원도시가스(주) [춘천/홍천/영월/정선 지역]

(단위 : 원/MJ, VAT별도)

	구	분	소비자요금표(원/MJ)	비	고
	기보	요금(원/월/세대)	950		
	- 1 -	취사	도매요금 + 3.1903	-	
주택용		난방	도매요금 + 3.1903	+	
		중앙난방	도매요금 + 3.4999	-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3.5148	-	
	영업1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3.5148	-	
	0 П 1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3.5148	-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3.5869	-	
OLHFS	영업2	하절기(12~3월)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3.5869		
일반용	8112	기타(4.5.10.11월)		-	
		1 1 1 7 7 7 -7	도매요금 + 3.5869	_	
	영업3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2.8244	-	
	(레저용)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2.8244	-	
	(,	기타(4, 5,10,11월)	도매요금 + 2.8244	_	
업무용		업무난방	도매요금 + 3.6181		
B10		레저용	도매요금 + 2.8244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3.6181		
	일반	하절기(5~9월)	도매요금 + 3.0335		
냉난방		기타(4,10,11월)	도매요금 + 3.6181		
공조용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2.8244		
	레저용	하절기(5~9월)	도매요금 + 2.8244		
		기타(4,10,11월)	도매요금 + 2.8244		
	0	만m³~20만m³	도매요금 + 3.0335		
산업용	20	만m³~30만m³	도매요금 + 2.6983		
(동절기)	30	만m³~40만m³	도매요금 + 2.3807		
12~3월	40	만m³~50만m³	도매요금 + 2.0635		
12 02		50만m³~	도매요금 + 1.6454	1	
	0	만m³~20만m³	도매요금 + 3.0335		
산업용	20		도매요금 + 2.6983	1	
(하절기)		만m³~40만m³	도매요금 + 2.3807	1	
6~9월		만m³~50만m³	도매요금 + 2.0635		
095	10	50만m³ ~	도매요금 + 1.6454	1	
	0	만m³~20만m³	도매요금 + 3.0335	1	
산업용		만m³~30만m³	도매요금 + 2.6983	+	
(기타월)		만m³~40만m³	도매요금 + 2.3807	+	
– ,		만m'~50만m'	도매요금 + 2.0635	+	
4,5,10,11월	40	50만m³~	도매요금 + 1.6454	-	
	두	절기(12~3월)	도매요금 + 3.4748	+	
열병합용		설기(12~3월) 절기(6~9월)	도매요금 + 3.4748 도매요금 + 3.4748	+	
들정집중		[설기(6∼9월) 타(4,5,10,11월)	도매요금 + 3.4748 도매요금 + 3.4748	+	
어른자기의	/ -	-F(4,5,TU,TT결 <i>)</i>		-	
연료전지용			도매요금 + 0.7003	-	
열전용설비용			도매요금 + 3.4748	4	
수송용(공급가)			도매요금 + 0.7003		

○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원주/횡성 지역]

(단위 : 원/MJ, VAT별도)

			(단위	: 원/MJ,	VAI멀노
	구	분	소비자요금표(원/MJ)	비	고
	기본	요금(원/월/세대)	950		
ᄌᄄᆘᄋ		취사	도매요금 + 2.5049	1	
주택용		난방	도매요금 + 2.5049		
		중앙난방	도매요금 + 2.7122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2.7275	1	
	영업1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2.7275		
일반용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2.7275		
할만용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2.7161		
	영업2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2.7161	1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2.7161		
업무용		업무난방	도매요금 + 3.0490		
냉난방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3.0490		
_	일반	하절기(5~9월)	도매요금 + 2.4120		
공조용		기타(4,10,11월)	도매요금 + 3.0490		
	0	만m³~20만m³	도매요금 + 2.2169		
산업용	20	만m³~30만m³	도매요금 + 2.0599		
(동절기)	30	만m³~40만m³	도매요금 + 1.8176		
12~3월	40	만m³~50만m³	도매요금 + 1.5752		
		50만m³ ~	도매요금 + 1.3330		
	0	만m³~20만m³	도매요금 + 2.2169		
산업용	20	만m³~30만m³	도매요금 + 2.0599		
(하절기)	30	만m³~40만m³	도매요금 + 1.8176		
6~9월	40	만m³~50만m³	도매요금 + 1.5752		
		50만m³ ~	도매요금 + 1.3330		
	0	만m³~20만m³	도매요금 + 2.2169		
산업용	20	만m³~30만m³	도매요금 + 2.0599		
(기타월)		만m³~40만m³	도매요금 + 1.8176		
4,5,10,11월	40	만m³~50만m³	도매요금 + 1.5752		
		50만m³ ~	도매요금 + 1.3330		
	동	절기(12~3월)	도매요금 + 2.7122		
열병합용	ō	ト절기(6∼9월)	도매요금 + 2.7122		
	기티	타(4,5,10,11월)	도매요금 + 2.7122		
연료전지용			도매요금 + 0.7003		
열전용설비용			도매요금 + 2.7122		
수송용(공급가)			도매요금 + 0.7003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참빛도시가스(주)

- 영동지역 [강릉/동해/삼척/속초 지역]

(단위 : 원/MJ, VAT별도)

	구	분	소비자요금표(원/MJ)	비	고
		기본요금	950		
ᄌᄄᆘᄋ		취사	도매요금 + 4.2022		
주택용		난방	도매요금 + 4.2022		
		중앙난방	도매요금 + 4.0647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4.1726		
	영업1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4.1726		
OLHFO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4.1726		
일반용	영업2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3.7019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3.7019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3.7019		
업무용		업무난방	도매요금 + 4.0340		
11111111	동	절기(12~3월)	도매요금 + 4.1726		
냉난방 공조용	하절기(5~9월)		도매요금 + 3.6368		
0 7 0	기	타(4,10,11월)	도매요금 + 4.1726		
	동	절기(12~3월)	도매요금 + 3.6977		
산업용	ā	· 절기(6~9월)	도매요금 + 3.6977		
	기티	-월(4,5,10,11월)	도매요금 + 3.6977		
수송용(공급가)			도매요금 + 0.7003		
연료전지용			도매요금 + 0.7003		

○ 명성파워그린(주)

- 평창지역

(단위 : 원/MJ, VAT별도)

	구	분	소비자요금표(원/MJ)	비	고
	:	기본요금	950		
주택용		취사	도매요금 + 3.5183		
		난방	도매요금 + 3.5183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3.8708		
	영업1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3.8708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3.8708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3.7461		
일반용	영업2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3.7461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3.7461		
	영업3 (레저용)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2.8244		
		하절기(6~9월)	도매요금 + 2.8244		
	(" 107	기타(4,5,10,11월)	도매요금 + 2.8244		
업무용		업무난방	도매요금 + 4.0567		
нТо		레저용	도매요금 + 2.8244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4.0567		
	일반	하절기(5~9월)	도매요금 + 3.3831		
냉난방		기타(4,10,11월)	도매요금 + 4.0567		
공조용		동절기(12~3월)	도매요금 + 2.8244		
	레저용	하절기(5~9월)	도매요금 + 2.8244		
		기타(4,10,11월)	도매요금 + 2.8244		
열병합용			도매요금 + 3.8257		
수송용			도매요금 + 0.7003		
연료전지용			도매요금 + 0.7003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 공통사항

- 1. 기본요금은 950원/월·가구로 가정용(취사, 개별난방)에 적용함. 단, 춘천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세대 및 원주지역 기업도시 열병합 발전지역은 「별표 2]의 취사전용 기본요금을 부과함.
- 2. 상기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적용일은 2022년 12월 1일 도시가스 사용분부터 적용함
- 3.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적용함.
- 4. 적용 열량은 LNG ㎡당 42.8406MJ로 적용함.
- 5. 수송용 소비자 요금은 공급가에 해당 도시가스 충전비용을 가산하여 부과함.
- 6. 강원도시가스(주) 공급권역의 일반용·업무용·냉난방공조용(대용량 레저용) 요금 적용대상은 "대명레저산업(주)(홍천군 소재), 강원랜드(정선군 소재)"로 한다.(단 공급비용은 강원도시가스(주)와 홍천 대명리조트 및 정선 강원랜드의 단가계약에 의거 '23.1.1.부터 '23.12.31.까지 124원/㎡(2.8945원/MJ)으로 적용하며, 매년 산정되는 영업용1과 독일해지는 시점까지 매년 3원/㎡을 인상 적용한다.)
- 7. 명성파워그린(주) 공급권역의 일반용·업무용·냉난방공조용(대용량 레저용) 요금 적용대상은 "㈜용평리조트(평창군 소재)"로 한다.(단 공급비용은 명성파워그린㈜와 ㈜용평리조트의 단가계약에 의거 '23.1.1.부터 '23.12.31.까지 124원/㎡(2.8945원/MJ)으로 적용하며, 매년 산정되는 영업용1과 동일해지는 시점까지 매년 3원/㎡을 인상 적용한다.)

[별지1] 듀얼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양식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번호			
③ 소재지	본 사: 사업장:					
④ 관리자	부 서	성 명	(전 화) (e-mail)	연 락 처 (휴대폰)		
⑤ 통지구분	□설치 □변	경 □ 폐 쇄	⑥ 설치(변경)일자			
⑦ 설치(변경)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OO도시가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 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관리자 소속, 성명,	듀얼연료 설비 설치 확인 및	계약종료(공급해지)	□ 동의함
연락처	연료대체 계약 및 서비스 제공	또는 공사취소시까지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거부시 듀얼연료 설비 설치에 따른 연료대체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E-mail	얼연료 설비 설치 확인 및	계약종료(공급해지)	□ 동의함
	연료대체 계약 및 서비스 제공	또는 공사취소시까지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시 듀얼 연료설비 설치에 따는 연료대체 계약체 관련 E-mail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ㅇㅇ시(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9조(계약의 준수) 제4항 1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 36 -

년 월 일

신고인(대표) ㅇ ㅇ ㅇ (인)

ㅇㅇ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2]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신청정보					
고객유형*	□개인	□사업자(개인)	□법인	□공공기관	□외국인
사용용도*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기타()□계량기등급()
소 재 지*					
가 구 수*					
면 적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번호)*	
주 소*			E-mail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u>=</u>)	

*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OO도시가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 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도시가스 공급 계약체결 및	계약종료(공급해지)	□ 동의함
연락처	서비스 제공	또는 공사취소시까지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시 도시가스 공급신청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E-mail	도시가스 공급 계약체결 및 서비스 제공	계약종료(공급해지) 또는 공사취소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시 도시가스 공급신청 계약체결 관련 E-mail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

OO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1. 고객정보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지3]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자 정보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가스 공급과 사용을 위해서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 항목 필수)

콜센터(-) | 사업자번호 000-00-00000 | (우) 00000 | 강원도

고객유형	□ 개인 □ 사업자(개인) □ 법인 □ 공공기관 □ 외국인 □ 기타())	
고객명(상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서 수령★ □ E-mail □ MMS □ 스대			스마트청구서 [] 지로
생년월일(성별)*		(성별 : 🗆 남 🗆	□ (i)	E-mail 주소		@	@	
연락처*			М	MMS 수신번호				
신분증 발급 일	자 및 빌	:급기관(본인확인용)						
2. 자동납부		□ 은행계좌 자동이체 [□ 신용	카드 자동이체				
신청인(성명 또는 상 호)			연 락	처				
신청은행(카드:	회사)			예금주명(카드소유자)				
계좌번호(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월/		년)	생년월일/사	업자번호				
예금주(카드소유:)	자)와 시	사용자의 관계 □본인	□부부	□부모 □형제	□자매 □	친척 □친구	□동거인 □기E	計(
위탁계약 시 개인정	정보가 안	I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 ·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 · 수 있으며, 동의를 거	록 필요	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	니다.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라 및
	수집형	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 이용기간	동의여부	
신청인 성명, 연락처, 자동이체 신청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카드회사, 카드소유자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예금주(카드소유주)와의 관계				자동납부(이체) 서비스 제공 자동이체 이용 종료시 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²	 같음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 보인(예금주/카드소유자)은 자동이체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요금 자동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이: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개인정보를 자동이체 서비스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청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세금계산서 신청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4. 보증 및 담보예:	치 정보		(당사의 담보(예치 규정에	비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됩니다)
담보예치 정보 🗆 보	중금 🗆 이	행보증도	변함 🗆 근저당	□ 기타() 예치금역	મ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시합니다							
OO 도시가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 제 15 조제 1 황제 1 호, 제 17 조제 1 황제 1 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황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 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신분증 발급일자/발급기관 도시가스 사용량, 사용요금 언체기록, 결제기록 - 생용량 검침, 요금청구/수납/추심 - 고객 요구사항 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 세금계산서 발행					<u>계약종료시</u> 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시 도시가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MMS 수신번호		• MMS	• MMS 청구서 서비스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mail		• E-m	nail 청구서 서비스	≟ 제공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연락처, 주소, MI 수신번호, E-mail	MS	• 경품	품추첨 및 배송을 위한 업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시 MMS/E- ■ 개인정보 제 3 자		.,	추첨 및 배송 서비	스 제공이	불가능	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항	목	제공목	적	보	유 및 이용기간	동의여부
					목조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목적	성 종료 후 파기	_ 등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거부시 도시가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라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상의 내용으로 도시가스 사용 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태/종목